

‘사유’ 재산, ‘개인명의’로 사후 종단출연 종령 개정

장례비용, 추모사업 비용 지출도 포함

스님들이 소유했던 재산을 입적 후
에 종단 내(內)에 출연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한 시행령의 명칭이 바뀌었
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4월10일자 <
불교신문>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으로 명
칭을 변경 공고한 것이다. 이는 기존
의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승려 사유
재산’으로 명기한 부분을 ‘승려 개인
명의 재산’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2시부터 한국불
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제2차
토론회의 명칭도 바뀌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스님이 입적

후에 개인명의 재산에 대해 종단 출
연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스님의
장례비용과 추모사업 비용을 문도 내
지 유족과 협의 수증(受贈)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승려 사유재산’에서 ‘승려 개인
명의 재산’으로 변경한 까닭에 대해
총무원 총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유
재산이라고 할 경우 마치 스님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
가 있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쩔 수 없이 개인명의 재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
혔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염주 하나라도 승가에 회향해야”

전계대화상 고산스님, ‘구족계 수계산림 현장’ 인터뷰

“부처님 제자라면 거액의 부동산이나 동산
은 말할 것도 없고, 주장자 하나 염주 하나라도
승가에 회향해야 합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스님은 지난 7일 예
비승들의 유언장 작성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
에서 “머리 깎고 먹물옷 입으며 세속으로부터
초탈하기로 한 수행자라면 사리사욕을 취해
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입적 후 종단 출연’이라는 제33대 총
무원 집행부의 핵심 종책에 강한 지지의 입장
을 표명한 것이다.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조실
이기도 한 스님은 이미 지난 3월1일 “입적 후
모든 재산을 종단에 출연한다”는 내용의 유언
장을 쌍계사 총무소에 접수시켰다. 종단의 옷
어른으로서 출선수법을 보인 셈이다. 이에 쌍
계사 전체 대중도 교구총회를 열고 조실 스님
의 뜻을 받들어 무소유를 실천하기로 결의했
다.

특히 종령은 스님이 갑작스레 입적할 경우
유산을 두고 속가 친척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끝내 소중한 삼보정체가 유실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전계대화상 스님 역시 이에 적극
공감하고 쌍계사 소속 말사의 예를 소개하며

“
늘 청정해야 할 스님들
입적후 일까지 걱정하며
재산에 집착한다면 곤란

”

경종을 울렸다. 종도들의 신앙이 두터운 어느
노스님이 남해군에 암자를 지었다. 그런데 스
님이 세상을 떠나자 돌연 속가의 며느리가 나
타나 민법을 내세우며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는
것이다. 고산스님은 “스님이 자신 명의의 재산
을 모두 종단에 귀속시킨다는 유언장 하나라도
써놓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단”이라며 안타
까워했다. 신도들이 불법승 삼보를 공양하겠다
는 정성으로 내놓은 삼보정체(三寶淨體)가, 불
교에 전혀 공헌하지 않은 속인에게 흘러나가는
데 대한 아쉬움이다. 아울러 “전국의 사찰에서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종도들의 여론을

모아 종책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
다.

전계대화상 스님은 “우리 스님들은 빈 몸으
로 절에 들어와 부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며 “세속의 인연을 끊지 못하고 삼보정
체를 속가에 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살아서도 항상 청정해야 하는
스님들이 입적 이후의 일까지 걱정하며 재산에
집착한다면 곤란하다”며 종령에 대한 일부의
오해와 불신에 촉비를 내려쳤다.

전계대화상은 종단 최고의 계사로 계단(戒
壇)의 설치와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한다. 스
님은 구족계를 받는 예비승 전원의 무소유 서
약에 대해서도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굳은 발
심으로 입산 출가에 행자교육을 거쳐 4년간의
기본교육과정까지 마친 수행자들에게 “수고했
다”는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란 마음으로 한 순간도 자만하거
나 방일해서는 안 된다”고 경책했다. 고산스님
은 “무소유 서원이 부처님처럼 살겠다는 발심
과 원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부단
한 정진을 당부했다.

직지사=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식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예비승들의 유언장
작성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고
산스님은 “머리 깎고 먹물옷 입은
수행자라면 사리사욕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장경 축전, 불교위상 제고 ‘계기’로



현장에서

2011년 고려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해 ‘대장경 천
년 세계문화축전’이 내년 9월
부터 45일간 대장경으로 열린
다. 대장경 천년축전은 유네
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인 팔
만대장경을 세계에 널리 소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
으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행사의 개최
를 알리기 위해 지난 3월25일
서울에서는 축전 조직위원회
주최로 ‘국민보고대회’가 열
렸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
로회의 부의장 밀운스님과 총
무원장 자승스님 등 종단을 대
표하는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그런데 국민보고대회에서
는 이해하지 못할 풍경들이
연출됐다. 주관단체 인사말
순서에 있어 해인사 주지 선
각스님은 맨 마지막으로 돌
렸다. 종단 어른인 원로의원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이나 중진 스님들에 대한 소
개도 빠진 경우가 많았다. 게
다가 교계 언론에는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았다.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하는
행사는 분명 불교행사다. 그
럼에도 불교는 뒷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국민
적인 축제로 분위기를 형성
하겠다는 목적이었다지만 연
연한 불교 행사에 불교가 소
외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의 전통문화 브랜드를
세계에 알려 문화강국의 위
상을 높이자는 것이 본래 목
적이려면, 중요한 콘텐츠를
보존해온 한국불교는 마땅히
대접받아야 한다. 소중한 문
화유산을 지켜낸 한국불교가
대장경 천년축전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 너무
큰 욕심일까.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단 스님들이 지난 6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입적 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의견수렴 거친 후” ‘개인명의 재산 출연’ “염려하지 않도록”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단,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단 스님들이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
고 환담을 나누었다. 현산·지환스
님 등 수좌회 대표단 스님 11명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
했다.

이날 예방에서 수좌회 스님들은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적 후 개
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대해
“총무원이 스님들의 의견 수렴 과정

을 더 거친 후 시행해 달라”는 입장
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스님들이
갑자기 입적할 경우 속가로 재산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

고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수좌스
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종단에서
시행 방안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접견실에서 화가에예한 가운데 환
담을 나눈 수좌회 스님들은 총무원
장 스님과 점심공양을 함께하며 대
화를 계속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 예방에 참석한
수좌회 스님들은 다음과 같다. 현산
·의정·지환·정환·불산·노웅·서강·강
설·성재·금봉·대원스님(무순).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모바일 포교’ 현실과 전망

15일 포교종책연찬회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정
호스님)은 오는 15일 오후3시 한국불
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
37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맞춰 모바일
포교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찬회는 ‘모바일 포교
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며,
송주실 포교연구실 주임이 ‘종단 모
바일포교를 위한 기반과 지향’에 대
한 주제 발표를 통해 모바일콘텐츠
확산에 따른 종단의 시대적 접근 방
식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준규 SK솔루션사업팀
대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전
망’을, 김종민 (주)이머지홀딩스 대표
가 ‘불교콘텐츠 Social Publishing 플
랫폼’을 주제로 발표한다.

포교연구실은 “이번 연찬회는 종
단 모바일포교 사업이 처음 시도되
고 있다는 시점에서 종단과 전문가
의 논의를 통해 미디어 포교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규 기자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사후 등에 따른 종단 출연에 관한 령」 시행에 대한 주요 질의 · 응답

■ 시행취지

1. 스님들의 출가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망한 이후에 개인명의 재산이 속가로 귀속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남은 재산이 속인들과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다.
2. 스님 사망 후 생전에 그 귀속처를 정하지 않은 재산을 통하여 승가복지와 승려교육 재원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1. 「승려법 제30조의 2」와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사후 등에 따른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의해 스님들이 유언장과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유한 재산내역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고, 유언장과 증여계약서에 제출되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 이 제도의 근거가 되는 「승려법 제30조의 2」와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사후 등에 따른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의하면 현재 스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별적인 재산을 각각 특정하여 종단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종단(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등록 제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스님들의 개별적인 재산내역을 신고할 필요도 없고, 사망 등의 재산 귀속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소유재산을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생전에 자설자함을 창건하거나 문중에 재산을 기증할 수도 있고, 말사에 재산을 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유언장 등에 근거하여 종단에서 스님들이 소유한 재산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고 간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종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개인 소유의 재산 내역을 세세하게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도 않으며 단지 사망 당시 “일체의 재산”을 유증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생전에 스님 개인의 모든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즉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알고 싶어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총무원)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종단에서 특정 스님을 일부러 별빈의 징계를 시키고, 사전에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따라 그 소유재산을 빼앗아 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 승려법 규정(승려법 제30조의 2 ②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 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 종단에 귀속 된다)에 따라 처음 종령을 제정할 당시 제적, 별빈의 징계에 처할 경우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에 증여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종단이 스님들을 징계하고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많은 우려가 있어서 제적, 별빈 등의 징계인 경우는 제외하고 환속한 경우에만 증여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악의적으로 사찰 재산 등 삼보정체에 손실을 끼치고 환속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일 뿐이다.
- 4. 종단이 아닌 교구본사나 말사, 문중에 그 재산을 기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갖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종령을 제정할 당시에는 수증처를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으로 한정하였으나 토론회 등 스님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재산 출연 수증처의 범위를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등록 제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까지로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추진하기로 하였다.
- 5. 사실사함을 창건한 스님들의 창건주 권한도 종단에 귀속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 창건주 권한은 조계종의 종헌(제94조 제4항 사실사암의 창건주가 그 사암(재산)을 종단에 등록했을 때는 그 창건주의 재산관리권을 보장하며, 그 사암 주지직의 사자상승함을 인정한다.)과 종법(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 제7조 사설 사암의 관리인은 설립자가 지정하는 연고인에 의하여 영구히 계승된다.)에 별도로 규정되어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전에 창건주 승계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대로 의사표시가 없으면 스님의 문중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사후 등에 따른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시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사후 등에 따른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 개최 안내

1. 일 시: 불기2554(2010)년 4월 19일(월, 음 3.6) 오후 2시 ~ 5시
2. 장 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3. 발 제: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사후 등에 따른 종단 출연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하여
 - 토 론: 교구본사주지스님, 중앙종회의원스님, 각 종정기관스님, 선원스님, 율원 스님, 강원교직자스님, 비구니회스님, 기타 승가단체스님

불기2554(2010)년 4월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